

99. 9. 16

학내 성폭력 세미나 - 성폭력 박물관

- 사회대 여학생위원회

성폭력이 가시화되고 또 그 개념이 세워져 온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 본 후 현재 여성주의의 입장에 근거한 성폭력의 개념을 보자.

1. 성폭력 개념의 성립

1983년-여성의 전화에서 아내구타를 문제화하면서 비로소 우리 사회에 성폭력이 가시화.

1985년-인신매매와 매춘 여성의 공개토론의 주제로 부각

-> 당시 성폭력은 매매춘, 인신 매매 등과 혼재되어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의미를 가지면서 조금씩 물위로 떠오름

1986년-권인숙 성고문 사건

1988년-변월수 사건

-> 이 두 사건은 강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기폭제 역할을 함. 그러나 아직 강간은 일상적이지 않은 특수한 현상으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1989년 강간을 주제로 한 이화여대 여성학 논문들은 우리 사회 강간문화에 대한 각성을 일으킴.

1991년-한국성폭력 상담소 개소. 성폭력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한국성폭력 상담소, 대구여성회, 김부남 사건 대책위원회)되었고 이것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또다른 비회원 단체들과 연합하여 총 12단체가 결합하여 활동

1991년 4월~1992년 7월-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성폭력 특위 내에서 성폭력 개념을 둘러싸고 논쟁

-> * 성폭력을 남녀간의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다양한 폭력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 해야 한다는 입장
* 성적인 폭력의 의미를 강조하는 입장
결국 =>'성적인' 의미를 강조한 폭력으로 종결

1994년 1월 성폭력 특별법 제정

1995년 1월, 1997년 8월 개정

2. 성폭력의 개념

1) 무엇이 성폭력인가?

* 성폭력으로 규정지을 근거: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 정조보호가 아닌 '성적 자율권'의 문제. 여성의 몸을 단지 가문 계승을 위한 재생산하는 그릇으로 보며 순결함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며 여성도 엄연히 성적 주체라는 생각은 자리잡히기 어렵다. 그러나 성폭력이란 정조의 문제가 결코 아니며 타자의 몸에 대한 동의 없는 침해이다.

* 켈리(Kelly)의 연속선의 개념

연속선: 1) 많은 다른 사건들 밑에 깔려있는 기본적 공통성, 2) 서로 통하고 쉽게 구분되지 않는 일련의 연속적 요소나 사건.

현실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각각 분리되어 인식되며, 더 심각한 성폭력과 덜 심각한 성폭력으로 구분 지어진다. 이것은 성폭력을 강간에 집중시키게 되어 그 외의 다른 유형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여기게 한다. 또한 양분법적 -성기 삽입 or 안됨, 동의 or 동의 안 함...-접근까지 더해져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이나 사고는 배제되게 된다.

성폭력 행위는 심각도에 따라 위계서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생률에 따라 연속선의 형태로 생각해야 한다. 일상적인 경험에서 가장 흔하지 않은 경험으로 그것들은 연속선 내에 위치하는 것이다.

* 성폭력 판단 기준으로서의 피해자 주관

흔히 성폭력이나 아니냐의 판단 기준으로 피해자의 동의 유무가 사용된다. 하지만 이때 여성의 '동의'라는 의미와 맥락은 재고해 봐야 하는데, 그것은 여성이 동의한 가운데 성관계가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그 동의는 암묵적으로 강요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남녀간의 비대칭적 힘의 관계와 여성이 성적 주체가 되는 것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영향 가운데 동의에 의한 성관계와 성폭력의 구분은 모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이성애적 성관계의 경험은

동의적 성, 이타적 성, 순응적 성, 강간으로 나아가는 연속선 개념화로 이해해야 한다. 이 때 성폭력으로의 규정에 있어서 판단지점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주관이다. 동일한 '동의'라는 외견속에서 자발적 동의인지 이타적 동의인지 등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주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상황을 불쾌하게 느끼고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피해자의 경험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성폭력에 있어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2) 성폭력 개념의 확장

* 성폭력의 '폭력성'

성폭력에 대한 초기 논의에는 성폭력을 성범죄로서가 아니라 폭력적 공격의 한 형태로 규정해야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성폭력은 성적 '폭력'으로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기제의 의미를 가지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방해하고 남성의 지배에 도전하는 기회 차단의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성폭력을 통한 사회적 통제를 드러내고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정치화하는데 기여하였으나 또한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성폭력을 '폭력'으로 개념화 할 경우 명시적인 폭력이 사용된 경우에만 성폭력으로 인정되며 데이트 강간과 같이 규범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폭력은 놓치기 쉬운 한계를 띠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에게 성권력을 기반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에 초점을 두는 '폭력'으로의 규정에서, 성권력으로 그 중심축을 옮기며 '성폭력'으로의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폭력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성을 기반으로 한 남성의 권력 행사이기 때문인 것이다.

* 성폭력에서의 '성'

성폭력은 성을 기반으로 하는 권력의 문제로, 단순히 '성적 행위'뿐만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행위'까지 포함해야 한다. 즉 '성폭력'이란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이다. 실제로 그 들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실제 경험에서 성적 행위와 성에 기반한 행위가 명확히 구분되기보다 중첩되어 나타난다.

그렇다면,

'성폭력'이란 개념과 '성차별'이란 개념이 혼재되지 않을까?.. 그러한 의문은 일정부분 타당하다. 성폭력과 성차별은 명확히 분리하여 사고할 수 없으며 실제 경험에 있어서 중첩되어 있다. 많은 경험들이 성차별이며, 동시에 성폭력으로 개념화 될 수 있다. 성폭력은 우리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기반으로 한 성차별의 문제이다. 동시에 성차별은 성폭력이기도 하다. 성차별은 그 안

에 담겨진 성권력의 폭력성-물리적, 비물리적(여성을 배제하는 환경, 행동 언어 등등)-으로 단순한 차별을 넘어선다. 차별화에 대한 개념은 폭력 속에 포함되어야 하며, 폭력의 범위는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교내 사례〉

- 97년도 도서관 음란편지 사건

이번 도서관 음란편지 사건은 도서관이라는 밀폐된 공간과 공부를 할 때 지정 좌석은 아니지만은 매일 한곳에 집중적으로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특수한 상황을 계기로 시작된 것 같다.

◎ 사건 개요

97년도 9월 25일 목요일 저녁을 먹고 난 후 자리에 돌아와 보니 피해자의 책상에 경북대 리포터 용지에 피해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어 놓은 음란편지를 발견. 같은 달 29일날 사진 한 장이 발견되었는데, 사진의 내용은 음란편지와 같은 의도의 내용을 담은 사진이었다. 가해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 도서관 벽보에 같은 연도에 일어난 복지관에서 예대 앞에 일어난 성추행 사건(차안에서 자위를 하는 모습을 창문을 열어 놓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변태 행위)을 보게 된 결과 이 사람과 동일한 인물임을 알고 총여에 신고함.

◎ 사건 경위

가해자는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이라는 것을 알아냈으며 더 자세하게 알아내고 싶었지만 본관 측의 거부로 인해 알아낼 수 없었다. 그러나, 예대 사건을 계기로 이 사람(가해자)은 본관 측과 총여의 합의로 인해 학위박탈수준으로까지만 합의되었다. 총여에서는 이 사건을 이슈화하고 싶었지만, 피해자와 본과 측에서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말에 의해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다. 예대 사건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자 도서관 음란 편지 사건 역시 같은 인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학위박탈과 함께 조용하게 마무리 (?)되었다.

- 99년도 과내의 성폭력 사건

◎ 사건 개요

피해자(박00)가 과 모꼬지 조편성 결과를 알기 위해서 과방에 왔다가 담배를 피고 있었을 때 나이가 많은 후배 서00이 들어와서는 낄데 안 낄데 못 가리고 다 참여한다면서 언어적 성폭력을 가하자 이에 기분이 상한 박이 담배를 바닥에 끄고는 말없이 나가려고 하자, 가해자가 담배꽁초를 주우라고 강요.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그냥 무시하고는 수업을 들으러 나감. 그러나 수업이 끝난 후에 다시 과방에 들어오자 가해자는 다시 담배를 주우라고 강요 또다시 무시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얼굴에 접착 테이프를 던지자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욕을 하며 소리치자 가해자가 다시 와서 얼굴과 머리 그리고 어깨 등을 마구 구타하였다. 이 사건을 본 선배 한 명이 그 후배에게 사과하라고 하자 구타한 것은 잘못한 일이나 후배들 앞에서 널 망신시켜주고 싶었다는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다. 또한 이 사건에 격분한 95학번 여학생들이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적어서 올리자 사과도 했으니 지워달라고 부탁. 뒤늦

게 그 사건을 알게 된 선배들이 비상 회의를 소집했지만, 모두들 동상이몽, 따라서 회의는 과 분위기를 쇄신하자는 정도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사건은 그 첫 발단부터가 더 이상 애교를 잘 부리는 귀여운 여자 후배일 수 없는 고학번 여학생에 대한 대다수의 남학생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말 때문이었고, 싸움 도중에 튀어나온 '여자가...'라는 발언들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과내 여학생이 당한 폭력을 당연시 여기고 묻어 버리고 싶어하는 무책임하고 남성 중심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한 여학생의 일로 지나가 버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은 남학생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폭력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긍하고 있지만 '000 이 맞을 짓을 했겠지'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정작 부각되어야 할 것은 '여자가 담배 피다가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에 대한 패션함에 가려져 버리게 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학생들의 대다수가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어했다.

◎ 사건 경위

이번 사건은 남학생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여학생들이 총여에 의뢰한 것으로 대다수의 여학생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공개 사과를 받기를 원했고,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했지만 과 학생회나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덮어두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다. 또한 00과 여학생에 의해 접수 신청을 했을 때도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총여에서는 조언을 하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밝힘. 과 내에서는 피해자의 노출을 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다고 의사를 밝힘.

- 99년도 생과대 화장실 사건

◎ 사건 개요

지난 8월 24일 오후 2시경 생과대 3층 여자 화장실 안에서 경제학과 3학년 손00가 생과대 여학생들에게 발견된 일이 있었다. 화장실 안에서 고개를 내밀고 밖을 쳐다보는 남학생과 눈을 마주친 여학생은 굉장히 놀라 행정실 남자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남학생은 결국 붙잡히게 되었다. 실제로 생과대 3층을 이용하는 의류학과는 방중에도 졸업작품 관계로 여학생들이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의류학과 학생들은 3층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마저 꺼려하는 상황이다. 그 남학생은 3층에 남자 화장실이 없어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그냥 호기심일 뿐 불순한 의도는 없었다'라고 항변(?)하였다. 하지만 그 남학생을 발견한 여학생은 물론이고, 그 사실을 안 의류학과 여학생들 또한 실질적인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그 남학생은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다수의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본다.

◎ 사건 경위

이 사건으로 가해자는 사건개요와 함께 공개 사과문을 쓰고 그 자보를 생과대, 상대, 4합, 복지관에 붙이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공개 사과를 하

는 선에서 그쳐야만 했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자신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다 준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고는 하지만, 몇 년씩이나 지속되어온 문제이고 실질적인 피해 학생도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한채 공개화 시키는 것에 머무른다면 단순히 사건을 묻어 두기에 급급한 처사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면담과정에서도 명확한 증거(상황) 확보부족으로 가해자의 일방적인 얘기의 선에서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의견을 전혀 무시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 내려지다시피한 처사에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미흡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상대, 생과대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고민확대와 좀더 실질적이 방안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내 상황을 정리하면서...

위 사건들을 보아서 알겠지만 어느 것 하나 사건의 정황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이중 대다수는 미해결된 사건들이다. 위에 밝힌 사건들은 그나마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진상규명의 노력이 있었기에 알려질 수 있었던 것임을 감안할 때 이밖에도 알려지지 않은 성폭력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목소리를 옮겨보자면 과에서 신망받는 조교에게 술자리가 끝난 후 강제 추행 당할 뻔한 이야기, 나이 많은 고학년 선배들의 과도한 스킨쉽, 단대 로비마다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포르노 사진이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등 학내 곳곳에 성폭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성폭력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학내 어느 곳에서도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북대의 경우 성폭력 사건은 보통 총여학생회로 접수되고 있고, 도서관에서 발생한 사건은 도학위, 가해자가 어느 단대 소속인지 명확히 알 경우에는 각 단대 학생회로 사건 접수가 된다. 그러나 각 접수 단위가 성폭력을 전담할 상시적인 창구를 개설해놓은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여자 간부를 중심으로 사건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수준이라 가뜩이나 여라 가지 사업으로 역량이 부족한 각 단위에서 성폭력 추방을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하기란 무리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 당국도 마찬가지다. 가해자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도 학교 이미지 추락을 우려하여 조용히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있고, 특히 도서관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로운 성희롱 사건들은 학창시절 남자라면 한번쯤 해봄직한 추억거리고 여기고 있었다.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수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학생 생활 연구소의 '여성복지 상담실'이라는 곳에서 여성과 관련한 모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성폭력을 전담할 수 없을뿐더러 담당교수가 다른 업무량이 많아 제대로 상담할 수 없는 형편이고 이곳은 말 그대로 상담만 할 뿐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는(발휘하려 하지도 않는) 곳이었다.

〈타 대학 사례〉

영남대학교 - 음악대 성폭력 사건

0. 들어가며

음악대 성폭력 사건은 음악대의 수업 방식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모두의 묵

인 하에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왔고(폭력까지 허용하는 분위기), 피해자 여학생들은 자신의 음악인생을 위해 덮어두어야만 하는 실정이었다. 사건을 접수받은 이후부터 음악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생각보다 오랫동안 관습처럼 굳어진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들 그리고 소수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의 심각성이 발견되었다.

1. 사건일지

- 11/11 영남대 여성주의 자치모임 '1312'에 처음으로 사건 접수
- 11/16 99년 음악대 학생회장 만남(여학생회 선거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 학생회장을 만나 음악대 상황 파악 및 사건해결을 위한 가해자 미팅을 맡음)
- 11/17 가해자의 공식적인 사과 및 사과문 발표
- 11/18 합창단장(김관호)의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공식적인 사과는 매우 형식적이었으며, 위협적이기까지 했다는 여러 명의 진술에 따라 피해자를 다시 만남. 이 과정에서 언어성폭력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성폭력이 있음을 알아냄.
- 11/19 학생회장을 만나서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가해자의 정반대 입장 또한 전달받았음. 또한 성악과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로 함.
- 11/20 성악과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며, 합창단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악과, 아니 음악대 전체의 성폭력 문제가 이미 위험수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자를 만나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전달.
- 11/23 음악대 정문 게시판에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공고.
⇒ 설문조사 결과는 100%의 여학생이 거의 매일 언어성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성추행 또한 50%에 가까운 여학생들이 상시적으로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강간 및 강간미수 또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성폭력들이 선배에 의해 일어나고 있었으며, 교수 및 강사 또한 간간이 일어나고 있었다.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 및 상담기구 설치 그리고 음악대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회의 구성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에 100%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해주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될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 11/23 음악대 여학생회장을 만남

이 과정에서 음악대 성폭력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이로 인한 여학생들의 고충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후에 음악대 성악과 성폭력 사건의 해결 방향을 합창단장 중심이 아닌 음악대 내 성폭력 근절 그리고 올바른 성문화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연대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연대회의는 음악대 여학생회, 학생회, 각 과 학생회장 및 여대표자 그리고 여성주의 자치모임 1312와 음악대 교수들로 구성된다.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위의 일지 안에 정리했음.

3. 앞으로의 진행방향

음악대의 특수한 문화를 이해하느라 보낸 시간이 너무 많았다. 일단 가해자의 사과와 사과문을 받아냈으나 이것은 사건을 빨리 조용히 마무리짓기 위한 형식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사과를 통해 이 성악과 문제는 일단락 짓는 것으로 합의를 받으

며, 이후에 음악대 내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이후에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기구를 설치 및 상담기구 그리고 처벌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임시적인 자치규약이나 논의기구를 만들고 감시 및 교양이 필요하다. 음악대 사람들의 비 협조와 1312의 일정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늦어지고 있지만 꾸준하게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집단간의 성폭력 사례

- 이대 대동제에서의 고대생 집단 난동 사건

고대생들은 우선 영산 줄다리기를 위해 열을 지어 있던 이대 학우들 사이를 치고 달리며 심지어는 가에 서 있던 한 학우의 팔을 잡아 질질 끌고 다녔다. (약 3미터는 끌려 다녔다.) 나는 지킴이 친구들과 팔을 끼고 그들을 막던 중 내 위로 고대생들이 밟고 넘어가게 되었는데 안경과 모자가 벗겨지고 너무 당황해서 꿈을 꾸는 줄 알았다. 그들은 이런 나의 모습과 학우들의 모습을 즐기며 통쾌해 했다. [1996년 대동제 피해사례 중]

1996년까지 12년간 이화여대 대동제에서는 수많은 고려대생들이 몰려가 행사를 방해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집단 성폭력이 자행되었다. 대동제 마지막 날에 고대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폐막제가 진행될 시각에 이화광장에 모이는 조직력을 보이고, 고무장갑과 호루라기 등을 사전 준비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운집한 이들은 광장 전체를 점거하거나 지도자(?)의 구호에 따라 광장을 에워싸면서 이대생들의 접근을 차단하며 고대 응원기를 부른 수 기차놀이 대형을 짜고, 저지하는 이대생들을 뚫고 광장과 연결된 운동장에 돌진하여 진행중인 행사를 방해하고 중단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이대생들에게 많은 육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가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하였다. 많은 이대생들이 넘어지거나 깔려 밟히는 등 부상이 속출했고, 1996년의 경우 한 이대 학우가 팔이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화여성위원회는 고대집단난동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한 활동을 벌여 왔다. 이화인들의 대동제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고대생 성폭력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사건 당시의 비디오 상영이 진행되었고, 고대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여 이대 여성위원회, 고대 여학생위원회, 이대 총학생회, 고대 총학생회의 입장을 공표 하였다.

이화여성위원회는 1997년 초부터 이대 총학생회와 함께 고대측에 예의 4자 테이블을 제안, 총 11차에 걸쳐 난동 근절을 위한 공동 논의와 실천 계획을 가져왔다. 이 사건의 재발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학기초부터 양학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들에서 교양작업을 하는 등 예방을 위해 활동하였다. 이후 이대에서는 여성위원회와 총학생회가 함께 고대생 집단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5월 중 자봉단인 ‘뭉침이’ 모집, 교양대회, 결의 대회 등 집중적인 활동을 펼쳤다.

대동제에 들어서 뭉침이와 함께 총학생회 산하에 있어온 지킴이, 영상이, 꼬우미 등 대동제 자봉단들이 모두 결합하여 3일간 이화광장과 운동장 주변의 순찰 활동을 시작으로, 난동이 가장 심해 온 마지막날에는 모든 자봉단들이 영산 줄다리기가 이루어지는 대동 폐막제 중 이화광장에 운집해 있는 남학생들을 감시하는 작업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고대 여학생위원회에서도 고대생 집단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실천단을 만들어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자봉단 뿐만 아니라 이대와 고대의 학생처 교직원, 이대를 졸업한 선배님들, 교수님, 비번이셨던 수워 아저씨, 이대 앞 폐미니스트 까페 ‘고마’의 주인 언니들 등 수많은 분들이

이화 공간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끝까지 폐막제에 함께 참석했던 이화인들의 힘으로 1997년 111주년 이화 대동제는 고대생들의 집단 성폭력 난동 없이 여성 공간 '이화인의 대동제'로 마감될 수 있었다.

♣ 마치면서

많은 학교에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학교측 즉 본관과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성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한 학우들이 많았다. 따라서 우선 성폭력이라는 개념 정의와 거기에 따른 조치, 즉 성폭력 공청회나 성폭력 학칙제정 운동을 펼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성폭력 학칙 제정의 필요성

대학 사회 내에서 학칙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의 학칙이라 학운 학내 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의미만을 담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칙이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학칙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려 한다. 학내 구성원 대다수의 동의에 기반하여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제함과 동시에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범죄임을 알리고, 단순히 성폭력이라는 범죄의 처벌을 위해서가 아닌 현재의 성폭력담론에 대한 문제제기의 역할까지 담보할 수 있는 학칙을 사고하는 것이다.

성폭력학칙은 단순히 성폭력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서 기존의 성기중심적 해결과정을 지양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는 입장의 반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학칙으로 제정됨에 의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성폭력 학칙은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대학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이 학생과 학생 사이에 발생하지만 교직원과 교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러한 교수와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은 권력관계를 포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력의 하위에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해결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그 피해자나 가해자 중 일방이라도 대학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면, 대학내에서 성폭력사건으로 문제제기하기가 힘들다. 이는 가해자가 학내 구성원이 아닐 경우 학교측에서 적극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부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몇년전 우리학교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엿보다 불잡힌 사람이 본교 학생이 아니어서 그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대학내의 왜곡된 성담론의 변화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대학 사회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며, 가해자나 피해자 중 일방이라도 대학사회의 구성원이면 학칙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 적용에 있어서 학내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강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응들은 더 효과적인 문제제기와 해결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적어도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겪어야 할 지난한 제 2, 제 3의 성폭력을 막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둘째, 성폭력 학칙은 대학 구성원의 교육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의 문제점을 피해자의 성적자율권의 침해로 파악한다. 하지만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경우는 성적 자율권의 침해와 더불어 교육권-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의 침해라는 특수성을 지니게 된다. 대학 사회는 명백히 대학 구성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녔다. 대학 사회의 구성 목적이 교육에 있다면 교육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장해 주는 것은 대학 당국의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미국의 대학을 살펴보면 대학에서 일어난 일은 대학이 책임을 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보상이나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 예방 대책 수립 등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의 대학당국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당사자들에게 해결을 돌리며 방관하는 자세를 보였던가. 하지만 너 이상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권은 학칙을 통해서 보장될 수 있다. 대학 당국은 성폭력을 자신의 일로 받아 같이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가져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만이 아닌 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에서 그러한 대학 당국의 책임있는 활동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것이다.

셋째, 성폭력 학칙은 대학내의 새로운 성담론을 사회적으로 유포시킬 수 있다. 성폭력 학칙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바는 비단 성폭력加害자의 처벌이 아니다. 전반적인 대학 공동체 내의 성담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성폭력 자체의 근절을 주목적으로 한다. 성폭력에 대하여 대학사회가 어떠한 입장을 갖는지에 따라 대학 문화라는 것이 구성되고, 성담론이 형성된다. 이는 특정공간의 문화나 성담론으로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속한 사회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제껏 대학 사회가 사회에 대하여 지녀온 선도적이 문제제기의 역할이 이러한 공동체의 새로운 성담론의 유포에서도 나타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흔히 진보적 공간이라고 불리는 대학에서 성폭력에 대한 성기중심적, 남성중심적 성폭력 담론을 해체하고 피해자 중심의 담론을 가져나간다는 것은 사회변화를 유도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학칙을 통하여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학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그 구성원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순간순간 생성되어 나가는 새로운 성문화가 아니라 학칙이라는 확실한 기제의 뒷받침을 통하여 대학 공동체 내의 성문화가 끊임없이 바뀌어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칙의 뒷받침을 통하여 재생산된 대학 사회의 성담론은 사회에도 문제제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 학칙에 있어서의 원칙

성폭력은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공동체 내의 성문화에 의해 일어나는 사회적인 범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폭력 사건에서는 성폭력의加害자 역시 사회적인 피해자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加害자는 성폭력이라는 사회적 범죄의 체현자로서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 이렇듯加害자이며 동시에 사회적 피해자인 사람을 생산하는 모순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이 성폭력이라는 범죄이므로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하다. 현재加害자의 죄과는 관대하게 다루어지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죄과가 돌아가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 또한 우리의 공동체 내의 성폭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에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던 성폭력 범죄의 딜레마를 원만히 해결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진정 우리가 원하는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학칙의 단순한 처벌체계 이상의 반드시 고수해야 하는 원칙을 정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원칙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다.

1. 성폭력의 개념에서의 원칙

-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 뿐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모든 폭력 행위를 일컫는다.

- 성폭력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경험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2. 제정과 적용에서의 원칙

- 성폭력 학칙은 성폭력의 사회성을 견지해야 한다.
- 성폭력 학칙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 성폭력 학칙은 모든 공동체 성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성폭력 학칙은 유연하여야 한다.

성폭력은 인간이 지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우리는 성폭력에 네 무나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그것의 심각성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여성으로서의 성적자율권 확보를 위해, 대학교성원으로서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을 지금 여기서 시작하자.**